



의안번호	제71호
회의연월일	2021. 5. 3. (제464회 정기회의)

심의
·
의결
사항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출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국)
제출연월일	2021. 4. 23.

범죄예방협력계장, 범죄예방정책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업법상 법인의 임원,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면서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대체 결격사유로 ‘심신상실,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를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정신적 제약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비업법 제10조제2항제2호(’21.7.13. 시행)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의 범위를 규정(안 제10조의2)

나. 특수경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31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심신상실자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조현정동장애·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자. 다만,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보와”를 “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1호(종전제10호)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2. 법 제5조,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신·구조문대비표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심신상실자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조현정동장애·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자. 다만,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경찰관서장(제31조에 따라 경찰청장 및 경찰관서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 9. (생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정보,-----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조,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 10. (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1. -----제10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범죄예방정책과	
연락처	(02) 3150 - 1331